

대구고등법원 2021. 3. 11 선고 2020나2571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1. 3. 11 선고 2020나25711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10. 15 선고 2020가합53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범준

변론 종결2021. 2. 25.

판결 선고2021. 3. 11.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10. 15. 선고 2020가합5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678,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16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5. 5.경 원고가 피고 B에게 베트남 호치민에 카페, 사무실 등(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업무를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의 개설 및 운영 비용 명목으로 2015. 6. 3.부터 2015. 12. 18.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 B의 계좌 및 피고 B이 지정하는 피고 C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217,161,8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위 돈으로 이 사건 매장을 개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경 이 사건 매장을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합계 217,161,8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중 46,389,800원을 이 사건 매장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고 위임 약정에 따른 보수금 29,093,747원을 취득한 것 외에 나머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고, 2016.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냉장창고 기계값 명목으로 약 4,000,000원 상당의 베트남화 80,000,000동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37,678,253원(= 217,161,800원 - 46,389,800원 - 29,093,747원 - 4,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출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고들은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할 의도로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137,678,253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37,678,2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장의 개설 및 운영을 위임하고 그 비용 명목으로 합계 217,161,8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B은 위 돈을 지출한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2)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일부를 부당이득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B은 원고의 위임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매장의 개설을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인테리어 공사, 비품 구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수회 이메일을 보내어 구체적인 매장 개설 준비 상황을 보고하였다.

② 피고 B은 2015. 12.경 이메일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위 지출 내역을 정리한 자료(갑 제2호증)를 보냈다. 위 자료에는 2015. 12. 4.경 당시까지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돈이 매장 임차 비용, 인테리어 공사대금, 사무용품 구입, 교통비, 식비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원고가 그 무렵 위 자료의 진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③ 원고는 2016. 2.경 이 사건 매장을 폐업하였고, 그 직후인 2016. 3. 15. "B 사장과 서로가 오해가 있어 모든 관계는 서로가 원만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이런 일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B 사장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B 사장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매장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확인서 작성 무렵에는 그 다툼이 대부분 해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16. 9. 2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냉장창고 기계값 명목으로 베트남화 80,000,000동을 지급받으면서 피고 B에게 "기계값 8,000만 동 영수함. B 사장하고 돈 관계는 모든 것 끝났음. 기계값1) 모든 것을 정산함"이라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확인서의 문언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정산되지 않은 금전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정산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원고가 베트남에서의 사업 진행을 모두 포기하면서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약 3년 8개월간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매장과 관련한 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상당한 금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위 확인서 작성 이전에 이 사건 매장의 양도대금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B은 위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 B이 원고에게 80,000,000동을 지급함으로써 기존의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종결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장의 개설 및 운영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 B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피고 C이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유용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용달

판사홍은아

판사함병훈

1) 식별이 불가능한 글자이다.